

콘스탄티누스의 종교정책(Ⅱ)*

정기환**

Ⅱ. 콘스탄티누스의 종교정책을 향한 이전 칙령들에 대한 재해석
Ⅲ. 콘스탄티누스의 종교정책
V. 관련된 기독교종파와의 관계
결론

Ⅱ. 콘스탄티누스의 종교정책을 향한 이전 칙령들에 대한 재해석

다시 서론에서 언급한 판단문제로 들어가서 위에서 다룬 여덟 개의 종교정책에 대한 황제들의 칙서를 검토 요약하는 것이 앞으로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종교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지금까지의 결론을 수렴해 보자.

첫째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4차에 걸친 칙령에 대해서 보면(303-305), 기독교에 대한 가치판단은 자신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존재부당위판단에 이르렀음을 볼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의 칙령(303)과 넷째의 칙령에서 기독교의 존재이유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기보다는 오히려 발본색원될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박멸을 요구(첫째)했던 것이며, 기독교 자체라고 볼 수 있는 성서를 불사를 것과 교회지도자들을 투옥하고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선조의 신들에게 온갖 방법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요구함(둘째)을 말하고 있고, 투옥된 지도자들이 희생을 드렸을 경우 방면할 것과 고위 크리스찬들의 시민권을 상실할 것(셋째)과 그 가족들이 계속 기독교를 고집할 경우 저들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조상의 신들에게 단채로

* 본 논문의 전반부는 지난해호(『종교와 문화』 제4집)에 게재되었음

** 목원대 교수

희생을 드리고 헌주하라(넛째)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갈레리우스의 칙령(311)을 보면 기독교에 대한 가치판단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갈레리우스는 디오클레치아누스 황제의 박해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이며 누구보다도 이에 대한 한계성을 철저히 깨달았던 것이다. 어조로 볼 때 분명 크리스찬들은 조상의 신들을 거절했고 스스로의 규범을 세워 선교했고 칙서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노출을 피했지만, 자신들의 결심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과 모진 죽음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종교로서의 존립부당위판단으로부터 존립당위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이 선한 질서에 반하는 질서를 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적극적인 가치판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기독교에 대한 가치판단의 혁명이요 전도(顛倒)이다.

세번째로 막시미아누스 다야 황제의 사비누스(Sabinus)를 통한 갈레리우스 칙령의 재해석(312)은, 기존 선조의 종교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그대로의 가치판단이 들어 있으며, 적극적 가치에 대한 해석수용태도가 후퇴되어 있다. 오히려 기존 종교에로의 복귀를 아직도 높이 평가하는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평가에서 명쾌한 해명을 유보하고 있다. 따라서 존립당위판단과 존립 부당위판단에서 판단중지를 선언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로마제국이 목표했던 신들에 대한 예배행위의 관철노력이 포기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크리스찬들이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이 예배행위의 목표가 위협에 처해졌다고 하는 판단 때문이다. 그런 그의 태도는, 갈레리우스의 칙령을 그대로 자기의 통치영역(소아시아를 제외한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칙서로 반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다만 구두로 속주의 총독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처형하지 말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처형했던 점에서 다시 한번, 궁극 이전(Antipenult)의 태도 천명이 갈레리우스의 칙서와 모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으로 갈레리우스의 칙령에 대해서 이 이상 주의(注意)를 보내지 말 것을 말하는 점에서 분명해지는 것이다.

네번째로 막시미아누스의 종교관용령은(313) 이것보다 먼저 선포된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티누스에 의한 밀라노칙령에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황제가 죽기 이전이란 점에서 전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그의 판단은 다분히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의 어조를 대폭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이제 떠오르는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 자신의 힘을 넘어서 존립당위판단에 들어가

있다. 그것은 이 칙서 처음에 황제가 속주와 백성들의 선을 위해 유익한 것에 힘쓰고 있음을 백성이 알고 있기를 소망한다는 데서 밀라노 칙령을 요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황제들의 칙서로 말미암아 행정관들이 기독교인의 재산을 탈취내지는 강점했던 사례를 지적하고 있는 점 또한 밀라노칙령에서의 기독교인에게로 재산을 복구시키는 조항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312년의 사비누스를 통한 막시미누스의 편지의 본래 의도가 기독교의 믿음이나 전례를 따르려는 자가 있다면 방해 없이 자유자재로 무엇을 원하든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은폐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막시미누스의 관용령은 분명히 자신의 태도를 뒤집은 사건이요 자신을 넘어선 대세에의 항복이요 자신을 넘어선 종교관용에 대한 적극판단이요 존립당위판단이었다. 그런 사실은 자신의 생각을 속주의 판사들이 오해했었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적극적 가치판단과 존립당위판단은 이 황제들의 관용을 따라 의혹이나 의심 없이 자유로 자신의 종교를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이 칙령을 선포한다는 구절에서와, 기독교인들의 탈취가옥부지에 대한 기독교인들에게로의 환수를 언급하는 구절에서 또한 밀라노 칙령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분명한 것은 억지로 대세의 흐름에 맡겨진 종교관용론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시대는 막시미누스 다야와 함께 그의 사고를 버린 것이다.

다섯번째로 밀라노 칙령은 지금의 모든 칙령을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당파적인 종교의 선택이 아니라 조상의 종교는 물론 기독교와 어떤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에서 기독교와 이교와 로마종교의 조상신 신앙을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내용의 전반에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이 각자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 수용, 예배할 수 있다는 자유가 천명되고 있고 둘째로 이에 대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유로운 예배의 보장과 더불어 신성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셋째 기독교에 대한 제한과 조건을 제거함으로써 기독교를 원하는 이들이 제지와 방해없이 향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넷째 기독교만이 아니라 타종교에 대하여 평화를 위해 자유로운 예배행위를 허락했고 자유로운 제의를 가질 수 있음을 명기하여 양자를 보증하는 것, 다섯째 기독교의 부지나 교회건물로부터 탈취한 것이나 매매된 것, 선물로 받은 것을 기독교로 환원시킬 것과 여섯째 이 문서에 대한 공포를 통해 이 은전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알릴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콘스탄티누스의 적극적 판단은 기독교의 존립 가능판단과 존립당위판단을 위해, 또한 그의 종교정책을 위해 주축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콘스탄티누스가 지향했던 종교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밀라노칙령을 바탕으로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을 여기서 확정해야만 할 것이다. 흐름으로 보아 1) 콘스탄티누스와 주변종교와의 관계가 해명되어야 하고(첫째, 둘째) 2)기독교에 있어서 법적인 규정과 관련된 것(둘째), 3)조건과 제한을 제거한 것(셋째), 4)기독교와 재정예관한 규정, 5)기독교 종파와의 관계가 설명되어야 한다.

Ⅲ. 콘스탄티누스의 종교정책

Ⅲ-1: 콘스탄티누스와 주변 종교

콘스탄티누스와 주변 종교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소위 조상종교라고 부르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의 생애의 순간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도 점차적으로 구체화된 것이므로 크리스찬이 되기까지 그가 어떤 종교적 타이틀 또는 이교적 타이틀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가 미트라리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아들 또한 라인지역에서 이 의식을 실제로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르카르트(Burckhardt)나 카임(Keim), 잔(Zahn)과 같은 학자들은 그가 아폴로 신앙을 유일신적으로 확대하여 후에 기독교신관과 연결한 것으로 보지만, 확실한 것은 전혀 아니며 근거없다.¹⁾ 무엇보다도 콘스탄티누스가 이 아폴로신앙을 찬동하여 끌어들이는 태양신과 주전각명(鑄錢刻銘)인 Soli Invicti Comiti(아말로²⁾ 콘스탄틴이 태양신의 숭배자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지만, 이는 사실 이교적인 군대와의 관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태양신은 군대에서 백전 백승의 태양(Sol invictus)이라고 일컬어지지만, 헤르쿨레스(Herkules), 마르스(Mars), 제우스신(Jupiter/Zeus)도 콘스탄티누스의 주전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동시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로마의 찬탈자인 막센티우스와의 싸움 이후에 콘스탄티누스가 트레브(트리에)에 갔을 때 그를 만났던 비로마인 연설가는 분명히 신의 도움으로써 그 전쟁을 이끌었다고 알고 있다(찬미 IX). 동물의 내장으로 점을 쳤던 이교신들은 콘스탄티누스에게 로

1) Viktor Schultze, *op.cit.*, S.760.

2) K.S.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Zonderban, 1970, Vol.1, p.175.

마정벌 전쟁을 거절했었다. “어떤 신이, 어떤 현존하는 신격이 그대를 그토록 격려하여 그대 자신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로마)를 해방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는가? 콘스탄티누스여! 그 신적인 뜻을 가지고 떠나면 그대는 어떤 다른 오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네”(Quisnam te deus, quae tam praesens hortata est majestas, ut ipse per temet liberandae urbis tempus venisse sentires? Habes perfecto aliquod cum illa mente divina, Constantine, secretum: contra haspoicum monita: c.2)라고 하여 거절했다.³⁾ 그러나 반대로 그 신은 장난처럼 동시에 승리도 처음부터 약속했었다. 그러나 “약속된 승리를 요구해야만 하리라”(…sed debes proissam divinitus petere victoriam c.3)⁴⁾라고 하면서 애매한 신탁을 받는다. 또한 아버지인 콘스탄치우스 클로루스가 신으로 등장하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운(星雲)가운데 있으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c.25). 그가 다신(多神)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307년 트레브(트리에)에서 콘스탄틴과 파우스타의 결혼에 대해 축하한 사람이 말한 것으로, “제신들의 충고로 돌아선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ad deorum concilia translatus)라고 했던 점이다.⁵⁾ 따라서 이런 점으로 보아 콘스탄티누스는 막센치우스가 있는 로마로 출정하기 전(312) 어떤 고정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위 선조의 신앙과 군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III-2: 법적 규정들

콘스탄티누스가 직접적으로 명령했거나 이에 준하는 공의회들은 그의 직접적인 의도이며 그의 종교정책 방향을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기욤 카브(Guillaume Cave)가 지시하는 대로 콘스탄티누스의 종교정책 공의회를 열거해보고 이에 대해 자세히 취급하는 것이여기의 과제이다. 특히 공의회에서는 당시에 문제된 것들을 모두 규범화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카브에 따르면 1)밀라노칙령 이후의 아를르(Arles) 공의회(314), 2)콘스탄틴의 명령에 의한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공의회(324), 3)서방의 황제로서 처음 자신이 사회했던 니카이아(Nicaea) 공의회(325), 4)팔레스타나의 씨자리아(Caesarea Palestinae) 공의회(334)가 그 것이나 이 씨자리아의 공의회는 알렉산드리아의 주

3) Eusebius, *Panegyricus*, c.2.

4) *Ibid.*

5) Epidatus, *Panegyricus*, VI, c.3.

교인 아타나시오스(Athanasios)가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⁶⁾ 따라서 앞의 세 개의 자료를 가지고 법적 규정들에 대한 논의로 삼는다.

III-2-1: 박해와 신자⁷⁾

Ar.9: 자신에게 고유한 규율 즉 세례를 다시 주는 관습을 가지는 아프리카인들

6) 콘스탄티누스가 명령한 교회 공의회는 그것이 세계 공의회의 성격이든 지방적인 성격이든 네 개다. 1) 밀라노 칙령 후에(313) 지시해서 열었던 아를르 공의회(Concile d'Arles, 314)는 “콘스탄티누스의 명령에 의해”(Constantini M. iussu) 200명의 주교들이 참여했다. 2) 니카이아공의회(325) 이전에 모였던 알렉산드리아 제3차 공의회(324)는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받은 편지를 지참하고, 코르도바의 호시우스와 더불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 알렉산더가 모든 이집트의 주교들과 더불어 아리우스의 문제에 대해서 열었던 공의회(III Alexandrinum ab Alexandro, omnibusque Aegypti episcopis, una cum Osio Cordubensi, eo a Constantino M. cum literis misso, incausa Arii)이다. 3)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명령에 의해서 아리우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전체 로마의 도시로부터 비두니아에 있는 황제의 대궁전에서 소집된 제일차 니카이아 세계공의회(Nicenum I. mandato Constantini M. episcopis ex omni orbe Romano, ad ventilandam Arii causam convocatis, anno 325. magna aula palatii imperialis, in Bithynia coactum)가 있고, 4) 334년의 팔레스티나의 씨자리아 공의회가 있다. 콘스탄티누스의 명령으로 유세비우스파에 의해 그곳의 주교인 유세비우스의 주교의 사회로 모인 것이다(Caesariense in Palaestina, anno 334. iussu Constantini M. a partis Eusebianae episcopis, praesidente Eusebio loci illius episcopo). 이 이외에도 콘스탄티누스의 명령이 아니라도 여기에 자극되어 이 시기에 모인 공의회로는 315년의 앙카라 공의회가 있으며 이 공의회는 디오클레치아누스의 박해로 말미암은 1) 배교자들의 처리 문제, 2) 교회의 규율문제로 모였다. 같은 연도에 네오 씨자리아(Neo-Caesarea)에서는 앙카라 공의회와 동일한 문제로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고, 또 같은 해에 제2차 알렉산드리아 공의회는 당시에 준동하는 아리우스 이설에 대해 알렉산드리아의 교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316년에는 두로(Duro)의 씨자리아에서 1) 박해시의 희생자 문제, 2) 배교자의 문제로 모였다. 335년에는 두로(Tyre)에서는 콘스탄틴의 권고로 334년에 좌절된 공의회를 위해 모인 것이다. 334년의 경우처럼 여기에 아타나시우스가 다시 나타나기를 거절한다. -336년에 콘스탄티노플 제1차 지역공의회가 모이는데, 앙카라의 마르켈루스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모였고 그의 책이 유세비우스로 말미암아 거절되었다. 아리우스파에 의한 정통노선의 일시적 혼선을 기회로 정죄했다. 이는 모두 325년에 시작했던 니카이아 공의회에서 불명확한 입장을 취했던 콘스탄티누스로 말미암아 야기되었던 부차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의회들이다(Dictionnaire universel et complet des Conciles tant généraux que particuliers des principaux synodes diocésains, des autres assemblées ecclésiastiques les plus remarquables, composé et rédigé par Ch., Peltier et Migne 참조)

7) 여기부터 약자가 나오는데 1) Ar.는 314년의 아를르 종교회의를, Al.은 324년의 알렉산드리아 제 III 공의회를, Ni.는 325년의 니카이아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티누스의 명령에 의해 만든 규정들이다.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제일차 자료를 지시하므로 특별한 각주가 필요하지 않다.

에 대해서는 이단으로부터 누군가 들어올 경우 사도신조에 대해서 묻고 그가 성부와 성자 및 성령으로 세례 받았음을 확실히 알았을 때 그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단지 안수만을 해줄 것이나 물어봐도 삼위 일체를 선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그에게 세례를 주도록 할 것임.

Ar.10: 고백자의 편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저들에게 고백자들의 편지를 철회하고 이 공동체(교회)의 다른 신자의 편지를 받을 것을 결정.

Ni.14: 배교한 경험이 있는 교리문답자는 3년을 청강자로 받아들이고 그 후에 <다른 교리문답자들>과 같이 기도할 것을 결정.

III-2-2: 박해와 성직자

Ar.14: 소위 성서와 거룩한 병들(성화가 들어 있는), 또는 형제(교도)의 이름을 누설하거나 내어준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 가운데 누구도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로 확인되면 성직자의 지위로부터 제외됨을 결정 (Traditores). 만일 그 동일한 자를 다른 사람들이 성직임명으로까지 조치한 사실과 성직임명을 수행한 자들에 대한 정당성이 성립되면 그 성직 임명은 저들에게 방해되지 않음.

Ar.15: 동료들 거짓으로 고소하는 성직자들에 대해서 저들은 죽을 때까지 성찬식에서 거절할 것을 결정.

Ar.16: 자신들이 해서는 안됨에도 여러 장소에서 성만찬을 수행했음을 알고있는 집사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을 결정.*

Ar.17: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성만찬에서 제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저들이 성만찬을 제외받은 곳에서 그곳에서 바로 성만찬에 받아들여질 것을 결정. 어떤 주교도 다른 주교의 권한을 침범하지 말 것.

Ar.18: 도시의 집사들에 대해서는 저들이 많은 자긍심을 가지지 말고 사제들에게 해야 할 존경심을 간직함으로써 저들에 대한(사제) 인식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말 것.

Ar.22: 배교한 후 이 이상 교회에 참여하지 않으며 참회할 것도 바라지 않다가 그 후에 병에 걸려 성례전을 요구하면 저들이 치유되어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면 성례전을 허락하지 말 것을 결정*

Ni.10: 박해시에 신앙을 부정하고 성직자로 승진된 자들은 적발될 경우 파직에 처함.

- Ni.11: 신앙을 부인하고 일반신도가 된 자들은 저들이 관용을 받기에 합당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죄를 참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청강자 생활 3년, 7년을 부복자로서 생활하고, 2년동안 신도들과 더불어 기도의 생활을 한 연후에 받아들일 것.
- Ni.12: 세상포기를 선언했다가 세속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에 대해서 - 1)신앙을 증언했다가 거절한 자들, 2)돈을 내고 자신들의 신분을 다시 찾은 자들: 결정된 것: 3년 청강자 생활, 10년을 부복자 생활, 그러나 어떤 경우도 자신들의 회심의 의향과 성격이 검토될 것(눈물과 인내, 선행을 통해 회심의 증거를 보일 것·진실된 회심자는 3년의 청강생활 후에 기도회 참석 가능-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참회기간을 마쳐야 할 것).

III-2-3 성직자 일반

- Ar.20: 자신들만이 주교를 임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떠벌리는 자들에 대해서 결정하기는 그러한 권리를 아무도 참취하지도 말며 이 일은 칠 명의 주교들이 함께 모인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칠 명이 모일 수 없다면 적어도 세 명이 없이는 성직임명을 할 생각을 감히 하지 말 것.
- Ni.1: 누구든 병석에서 의사들의 손으로 외과 수술을 했거나 야만인들로 말미암아 거세된 경우 그가 성직자의 명단에 등재된 경우에 그로 하여금 성직자들 가운데 그대로 두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건강한데 스스로 거세했고 성직자의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는 정직(停職)되어야 하며 그런 어떤 사람도 앞으로는 승진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사실은 상황에 책임이 있어서 스스로 거세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 것과 같이 또한 야만들이나 자신들의 주인에 의해 고자가 되었으나 유자격자인 것으로 발견되면 규범은 그런 사람들을 성직으로 인정한다.
- Ni.3: 이 대공의회는 자신의 어머니 또는 자매나 숙모나 의심받을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주교, 장로(사제), 집사, 또는 어떤 성직자라도 자신과 더불어 동거하기 위해 데리고 들어온 여자를 두는 것을 금한다.

III-2-4: 성례전

- Ar.3: <평화>시기에 항복하는 자(범죄)는 성례전으로부터 격리할 것.
- Ar.4: 신자로서 곡마장의 마부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가 말을 부리는 한에서는 성만찬에서 격리할 것을 결정.
- Ar.5: 연극인들은 연극을 지속하는 한 성만찬에서 격리할 것을 결정함.
- Ar.6: 병석에 있는 자로서 믿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안수해 주는 것을 결정함.
- Ar.7: 믿는 자로서 행정직에 종사하는 자들에게는 저들이 자신들의 직능을 행사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 지역주교의 감찰 하에 있을 것과 교회규율에 반대되는 행위를 범하게 될 경우 그 때만 저들이 성만찬으로부터 제외된다는 조건으로 관직임명 후에 <교제의 편지>를 받도록 할 것을 결정.
- Ar.12: 이교도들과 결혼하는 젊은 믿음의 딸들에 대해서 저들은 한동안 성만찬으로부터 격리하게 할 것을 결정.
- Ni.13: 죽는 자들에 대해서 고대의 경전법이 아직도 유지되어야 한다. 즉 죽어가고 있는 자들은 저들의 가장 절핍한 마지막 지참물이 박탈당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이 절망적이었던 사람이 성만찬에 허입되고 그 분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산 사람들 가운데 끼게 되면 이 대공의회가 확정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할지라. 그러나 일반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성만찬에 참여를 청하는 자가 있다면 주교는 그 사안을 검토한 즉시 그 분여식에 참여시킬지라.

III-2-5: 순회성직자

- Ar.2: 장립된 곳이 어디든 사목자들은 그 곳에 머물러야 할 것.
- Ar.21: rm 밖에 다른 곳에 정착하기 위해 자신들의 임직된 장소를 늘 떠나는 사제들과 집사에 대해서 내린 결정은 자신들의 사목을 임직된 곳에서 행하라는 것과 자신의 임직처를 떠나 다른 장소로 옮겨가기를 원한다면 파직처분 할 사.
- Ni.15: 소동과 분당을 이유로 성직자들이 이 곳에서 저 곳으로 옮겨 다니는 일이 발생하면 이는 전혀 진압되어야 하며 이 니카이아공의회 이후에 그런 일을 시도하거나 스스로 방기하면 그런 시도는 취소되어야 하며 자신이 주교나 성직자나 집사로 임명받은 교회로 복귀시킬 것.

Ni.16: 교회규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교회를 떠나는 어떤 계급의 성직자들도 어떤 형태로든 다른 교회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됨. 저들을 자신들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있는 모든 압력이 가해져야 할 것. 계속 고집하면 파면이 정당하다. 교구주교의 허락 없이 그 교구에 속하는 다른 사람을 몰래 빼내어 자신의 교구에서 성직임명을 한다면 그 성직임명은 무효로 할 사.

III-2-6: 성직자의 고리대금업

Ar.13: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제의 봉사의 사제들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주신 규칙에 따라 성만찬으로부터 격리할 것.

Ni.17: 성직자는 고리로 돈을 내놓지 않는 자라는 성서의 말씀을 잊고 이 공의회 이후 계약으로 이자를 받거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을 거래하거나 50%의 이율을 물게 하거나 그 불명예의 이득을 뜯어 내는 자가 있다면 성직에서 파직되어야 할 사. 저들의 이름은 성직록에서 지워야 함.

III-2-7: 관습

Ar.1: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익에 관하여 처음으로 규정해야 할 것은 《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으므로》 이 부활절 절기는 매우 경건하게 지켜져서 그 신앙심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분열이나 불화들이 일어날 수 없도록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주의 부활절은 전 세계에서 동일한 날에 준수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결정하였다.

Al. 니산 14일이 아닌 춘분 후 만월이 온 후 첫 주에 지키는 오늘과 같은 부활절을 지킬 것을 논의.

N.20: 주일 또는 오순절 기간에 무릎을 꿇지 말 것. 자신들의 기도를 서서 주께 드려야 할 것. 이 동일한 관습이 지켜지도록 할 것.

III-2-8: 제도

- N.18: 1) 집사들은 성만찬을 성직자에게 분여하지 말 것.
2) 집사들은 저들보다 상석에 앉지 말 것.
3) 집사들이 성만찬을 장로에게 분여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것. 권리 없는 자들이 권리있는 자들에게 성만찬을 분여한다는 것.

- 4) 몇몇 집사들이 주교들보다 먼저 성찬을 받는 일이 있음 이 모든 관행을 억제해야 할 것. 집사들은 주교의 봉사자이고 장로(성직자)들에게 예속됨과 주교,장로의 손으로부터 장로에 이어 성만찬을 받을 것. 집사들이 장로(성직자) 가운데 앉는 일이 허락되어서는 안될 것. 이는 규정과 계급에 반대되는 일임.

III-2-9: 신학

Al. 1) 콜뤼트파(Coluthé)의 문제-이 종파의 창시자인 콜뤼트는 알렉산드리아의 사제로 알렉산드리아시의 교회 중 하나의 교회를 맡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당시의 기독교의 이단인 아리우스파에 적대해 충분히 용기 있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그 주교와 격리하고 분파를 형성했다. 이 파는 마니교파처럼 하느님이 인간들을 괴롭히는 악의 창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대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이 콜뤼트를 비난하고 그 파 가운데서 교회의 성만찬에서 자신들이 옛날에 지녔던 그 자격으로 돌아오려고 청원하는 이들이 있어 이 공의회가 저들을 다시 사제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자신이 안수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전의 직위를 다시 찾게 하기로 결정함.

Ni.8: 2) 카사러파(그리스 명으로 불어의 콜뤼트파를 말함)가 공적으로 가톨릭교회로 넘어올 경우 안수를 받고 성직자로 남을 수 있도록 공표.

3) 먼저 저들은 가톨릭교회 규정을 받아들여 따를 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

4) 가톨릭교회 주교 또는 성직자가 있는 도처에 카사러파가 들어 올 경우 두 주교를 만들지 않도록 부주교직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

- Hosius von Cordova는 사벨리우스파의 이설을 전복시키기 위해 삼위 일체의 본질(Substantia)과 위격(Hypostasis)을 제안했다.

III-2-10: 일반신도

Ni.2: 짧은 교리문답자의 생활을 끝내고 근래에 이교도로부터 기독교신앙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곧장 영적인 세례로 받아들여지고 저들의 세례와 동시에 주교와 장로직위로 승진했던 결과로 말미암아 교회의 규정에 대한 많

은 위법사실들이 생겼으므로 앞으로는 그런 류의 어떤 사건도 발생해서는 안될 것을 합의했다. 그 이유는 교리문답자는 세례를 받은 후에 심화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며 계속된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도의 말씀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곧 근래의 회심자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교만스럽게 될 것이며 정죄와 마귀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III-2-11. 윤리

Ar.11: 자신의 부인을 간통현장에서 잡았으나 한편으로 법적으로 재혼하는 것이 금지된 아직 젊은 자들인 그들에 대해서, 비록 그녀가 간통자라고 하더라도 그 부인이 살아있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부인을 취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

Sch.: 오래되긴 했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고대의 권리를 처음으로 비난했다(Latourette 273). 어린이들을 죽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고의 보조로 필요한 자들이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273/Lat.)

IV-1: 조건과 제한 철폐

콘스탄티누스의 종교정책은 314년까지는 기초적인 사안들이었다. 이들 종교정책 중 많은 종교정책은 리키니우스가 동방에서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다. 그 이후의 종교정책의 방향은 리키니우스가 제거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콘스탄티누스는 1) 기독교의 성직자를 국가에 내는 모든 공여금에서 제외했다. 이는 다른 조상종교 또는 로마종교의 사제들에게 주어졌던 것으로 기독교 성직자들에 대한 제한의 철폐를 말하는 것이다(Cod. Theod, XVI: 2, 2.). 이 사건은 성직자계급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쇄도를 유발했으므로, 이후에 따라온 또 다른 조치는 국가의 가장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었던 원로원 계급의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제를 하더라도 정부에 거의 손실이 없는 자들에게 성직을 주는 것으로 제한했다. 2)독신자들과 어린이가 없는 자들에게 유산을 받는 것을 금했었던 법령들이 성직자를 위한 고려점에서 철폐되었다(174). 3)이교 신전에서 행하던 노예의 해방이 이제는 이것이 철폐되어 기독교의 주교와 성직자 앞에서 입법화되었다. 4)소송자는 주교 앞에 소장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으며 주교의 판결은 시민

관료들에 의해 승인되어야 했다. 5)숨어서 하던 예배가 이제 철폐되어 주일(Dies Dominica)이 설치되었으며, 법정과 도회지의 노동을 중단함으로써 이교도의 휴일들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되었다(유스, 콘생 IV.18/). 6)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콘스탄티누스는 속주의 총독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순교자들의 기념일을 기억하고 교회의 절기를 존중할 것을 명령했다(유스콘생, IV, 51, 52). 그는 종전에 철폐했던 교회를 세우고 확장했으며 장식하게 했다. 7)종전에 없이 일반 주교들에 권한을 주고 격려하여 시민행정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했다. 8)그 스스로 많은 교회를 세웠다. 이에 대해 그의 어린 시절에는 검투장에서 죄수들을 죽이게 했었으나(Cod.Theod.) 그의 후기에 가서는 그런 시함을 하지 못하도록 철회시켰다(유스콘생, IV, 25). 과부들, 고아, 가난한 자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고, 부도덕과 부도덕 종교제외에 반한 칙서를 냈다(Coleman, op.cit. pp.43-45).

IV-2: 기독교와 재정에 관한 규정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언급하는 것은 그의 종교정책에서 찾아보기 힘들지만,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카르타고의 주교인 캐킬리아누스(Caecilianus)에게 보낸 편지가 전한다. 거기에 보면 가톨릭교회의 이름을 명기한 몇 사역자들에게 비용으로 얼마를 기여하는 것이 아프리카, 누미디아, 마우레타니아의 모든 속주에서 황제의 기쁨이었으므로, 아프리카의 저명한 재무상인 우르수스(Ursus)에게 편지를 발송하여 재무상인 그가 캐킬리아누스의 앞으로 3,000포리의 돈을 지불하는 데 신경을 써줄 것을 통보해 놓았다고 했다. 그래서 앞에 언급한 돈의 액수에 대한 전달을 받게 될 때 호시우스가 캐킬리아누스에게 보낸 일정표에 따라 이 돈이 위에서 지명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명령하라고 한다. 그런데 그 지명한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내 목표를 시행하는 데 무언가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캐킬리아누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경제담당관인 헤라클리데스(Heraclides)로부터 분명하게 요구할 것을 말한다. 헤라클리데스가 여기 있을 때 콘스탄티누스가 말했던 것은 캐킬리아누스가 혹시 그에게 돈을 요청하면 의심없이 그 돈을 건네주는 데 주의를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목표와 의도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불안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여러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가톨릭교회의 일반신도를 오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콘스탄티누스가 듣고, 그 지방 총독인 아눌리누스(Anulinus)와 치안을 담당하는 파트리키우스(Patricius)에게 이 일과 관련되는 다른 일에 있어서 특히 주의를 요구하고 그런

일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했다. 이것은 특히 아프리카교회의 정비와 복구를 위하여 쓰이는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에 가톨릭교도에 대한 테러가 있었음을 알게 한다. 콘스탄티누스는 국가의 재정을 분명히 교회의 구조정비와 확충을 위해 쓰고 있다는 좋은 증거이다(*X, 6, 1-5)

V. 관련된 기독교종파와의 관계

락탄치우스(Lactantius)는 “제국을 인수받은 후에 콘스탄티누스는 크리스찬들을 제의와 그들의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 외에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⁸⁾라고 한 말과, 유세비우스가 “그는 경건한 우리 기독교의 말씀에 대해 아버지 자신의 열망을 다시 세워 놓은 것이다”⁹⁾라고 한 말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의 관심사를 두 역사가가 잘 드러내주고 있다. 과연 콘스탄티누스가 리키니우스를 이기고 제국의 통일을 이룩한 가운데(324년이후) 무엇보다도 선행시켜야 할 과제는 자신이 고백한 기독교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것이었으며 그 통일성은 기독교 교리 중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의 확립이었다. 콘스탄티누스의 생애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325년의 니카이아 세계공의회는 바로 이 삼위일체의 이론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과정 중에 어떤 기독교 관련 종파나 유사이론이 교리형성에 지장을 주었으며 그런 장애를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제거했느냐이다.

V-1: 318-325년의 교리적 이합집산의 상황¹⁰⁾

이 논쟁은 주로 동방에서 이루어졌지만 서방인들의 성공적인 참석리에 이루어졌

-
- 8) Lactantius, De mort. persec. 4, 3: Suscepto imperio Constantinus Augustus nihil egit pr-us quam Christianos cultui ac Deo suo reddere. Haec fuit prima eius sanctio sanctae religionis restitutae.
- 9) Eusebius, HE, VIII, 13, 14: ζηλωτὴν ἑαυτὸν τῆς πατρικῆς περὶ τὸν ἡμέτερον λόγον εὐσεβείας κατεστήσατο.
- 10) 졸저인 「통제와 자유의 시각에서 본 교리형성(1-4차 공의회를 중심으로)」을 참조하시오. 이것은 하버드대 신학부에서의 본인의 방문교환교수시절(1995-6)에 저술한 것으로 1995년 11월 30일 보스턴대학의 Hartman Hall(745 Mass. Ave. Boston)에서 제1차 글로벌 강연으로 초대받아 시행한 것이다(Global Lecture). 그 기념으로 그것을 좀 더 확충하여 한국에서 라틴어로 작성했으며 “De Formatione Doctrinarum ex Conspectu Moderationis Libertatisque”란 제목으로 나왔다. 그에 대한 일부는 목원대학교 논문집 제 31집에 실려 있다(1997, 3).

다. 논쟁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신성 즉 그의 선재시에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했느냐라는 부분이었다. 이를 둘러싸고 1)그노시스파, 2)사벨리우스파, 3)오리게네스파(동방주교들의 대다수)와 그 중도파(씨자리아의 유세비우스), 4)좌파인 루키아노스파(이들은 오리게네스의 다수파보다 로고스의 종속설을 한층 예리하게 주장하였다)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들 중 오리게네스파와 루키아노스파가 기독교주장은 물론 학문적인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파였다. 그 대표자로서[3)과 4)의] 아리우스는 하느님으로부터 로고스(그리스도)를 완전히 분리하여 로고스는 하나님의 본질과 전혀 같지 않고 이질적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모든 점에서 그는 아버지의 본질과 다르며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히 같지 않으며 오히려 하느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 로고스는 하느님이 무로부터 첫째의 것으로 가장 높게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다라고 주장되었다. 그는 시간창조 전에 세대의 생성 전에 파조되었으며, 무로부터 창조되었으므로 없었던 때도 있었으며,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인간이 된 이 로고스는 수난 가능했고 가변적이었으나 그의 본질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선하게 잔존했다. 그는 하느님으로 호칭되나 실제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주장되었다.

이 네 파에 대하여, 아직 불분명한 조류이나 후기에 '정통파'라고 불리는 소아세아 계열의 파가 있었다. 이들의 특징은 1)철학적 사변을 거절하고 하느님의 하나됨(Einheit)을 강조하며 로고스의 신성을 주장한다, 2)사벨리우스적 단일신론을 거절하고 분명한 논리적 인식 대신에 개념의 신비를 주장한다. 3)이 정통주의적 입장은 실재적 구원론에 해당하며 후기에 이그나치우스로 대표되어진다.

V-2: 교회의 규제

1)니카이아 공의회 이전에 다루었던 것은 사모사타의 바울이¹¹⁾ 제기했던 문제였으며 그것은 양태론적(아버지=아들=성령)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안디옥의 지역공의회(268)에서 이미 그것을 거절했다. 사모사타의 바울은 로고스와 아버지가 동일

11) 사모사타의 바울은 AD.260년 이후로 안디옥의 주교를 지냈으며 자신에 대처한 공의회가 각각 264년과 268년에 열리기도 하였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론 및 기독교론의 문제로 268년 사제인 말히온(Malchion)에게 이단으로 고소되어 파직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에 의해 272년경 점령되어 축출되기까지 그 당시 그 유명한 팔미라의 여황제였던 제노비아(Zenobia)의 공작자로서 버티기도 하였다. 자료가 매우 부족하므로 그의 교리사적인 입장을 이해하기에 어렵다. 종전부터 그는 동력적 단일신론자로 생각되어왔고 로프스(F.Loofs)와 같은 학자는 그를 경세적 삼위일체론적 전승에 예측시키고 있다.

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로고스가 다름아닌 아버지가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품성의 속성과 구분은 없어진다. 그 신적본질인 동일본질은 처음에 하나였다가 둘로 쪼개져 나누어져 반쪽의 하나님, 반쪽의 로고스를 구성하고 있고 여기서는 하나님과 로고스를 구분하지 않은 하나님 자신의 이중 분열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말은 아버지와 로고스 이전에 다른 한 본질을 전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동일 본질이라고 해도 이 공의회에서는 거절당한 것이다.

2)알렉산드리아의 지역 공의회(318): 로고스의 종속론을 주장했던 아리우스가 같은 멜레치우스파로부터¹²⁾ 공격을 당했으므로 당시의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이던 알렉산더가 그를 파문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극좌파이던(아버지와 로고스의 완전 분리)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에게로 도주했고, 루키아노스파가 아리우스를 지지했으므로 삼위일체론의 형성에 큰 지장을 주게 되는 요소를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이 요소의 올바른 문제해결은 핵심적인 신학적 사안이 되었다. 이 사건은 니카이아 공의회에서 가장 진지하게 다루어진 문제 중에 하나이다.

V-3: 정치적 통제¹³⁾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니카이아 공의회를 모이게 된다. 시기적으로 325년 파울리누스(Paulinus)와 율리아누스(Julianus)가 집정관서인 6월 19일에 소집했다. 문제는 오리게네스의 좌파요 아리우스의 입장에 대한 찬동자인 니코메디아의 유세

12) 멜리치우스파란 상부 이집트의 튀카폴리스의 주교이던 멜리치우스(Melitius)란 이름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는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시기에(305?) 하부 이집트에 있는 고아가 되어버린 교회들을 방문하고 다녔다. 그 때 그는 당시에 도주 중이었던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인 페트루스의 감독관할권을 얻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체포되었으며 성채로 추방되었다가 심지어는 팔레스티나로까지 추방되었다. 도주했던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페트루스가 나타나자 그는 멜리치우스를 공의회에서 파직을 시켰고, 306년 부활절에 회람서를 통해 배교자들을 다시 받아들이기 위한 참회방법을 규율화 하였다. 멜리치우스는 이에 반대했고, 도주했던 페트루스에 대해 고백자들이 편을 들어주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순교자의 교회>를 창설하고 고백자들을 규합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311년경 11월에 가서 멜리치우스가 아니라 페트루스가 순교했을 때도 그 분열은 그칠 줄을 몰랐다. 이들의 규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니카이아 공의회(여기서 콜뤼트파 또는 카타르파라고 불리었다) 시기에 이집트에는 29개의 멜리치우스파 교회가 있었으며 가톨릭교는 100개 정도가 되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 멜리치우스파를 박해했다. 저들은 이미 확산된 수도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는 8세기까지 증명된다.

13) 위에서 제시한 저자의 줄고를 참조하시오 「통제와 자유의 시각에서 본 교리형성」, 목원대 논문집 31집(1997, 3).

비우스(Eusebius von Nikomedien), 니카이아의 테오그니스(Theognis von Nikaia)와 칼케도니아의 마리(Marie de Chalcedoine) 등이 아리우스를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자신들의 신앙고백을 작성케 했던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은(로고스)무로부터 나셨으며 그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악으로도 선으로도 행위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공의회는 교부들은 아들은 어떤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하느님의 본질과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왔다. 만물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은 사실이나 로고스만은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왔다. 아들은 하느님의 덕목이며 그의 유일한 지혜이며 영원한 그의 형상으로 아버지와 모든 점에서 유사하며 불변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참된 하느님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아들은 만물보다 앞서 선재했으며 달솨이였다가 육신이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코르도바의 호시우스(Hosius von Cordova)가 작성에 책임을 졌으며 헤르모게네스(Hermogenes)가 공의회에서 낭독했다. 결국 이것은 서명단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리우스파 중 17명이 처음에 이 선언을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다섯 명으로 줄게 되었다(Eusebius von Nikomedien, Theognis von Nikaia, Marie de Chalcedoine, Theonas, Second de Lybie).

결과는 아리우스가 일리리아로 추방당하게 되었으며, 그의 작품(Thalia)이 정죄되었으며, 이들의 작품을 불사를 것을 콘스탄티누스가 명했으며, 그런 작품의 은닉자들에게는 극형을 명했다. 알렉산더가 파문에 처했던 모든 자들에게도 이 추방령이 적용되었다(Euzoius, Pi-ste, Second, Theonas).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니카이아의 신조를 선언하게 하고 자신의 주교에 대해 항거하는 아리우스와 그의 일당들을 제쳐했으나, 그는 이 삼위일체론을 두고 갈라진 여러 파들 중 어느 하나에게 승리를 안겨주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오히려 가능한 한 유연성있는 공식(Formular)으로 이들 계파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다. 이 사실은 콘스탄티누스가 죽기 이전에 추방시켰던 자들(아리우스,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 등)을 다시 불렀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이런 정책은 수습할 수 없는 국면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의 아들들을 이은 제2차 세계공의회(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까지 계속된 논쟁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형성하게 된다.

결론

저자는 본 논문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네 세기 동안의 다섯 개의 황제조치를 통하여 그 당시로는 박해받고 억눌렸던 기독교가 어떤 가치판단과 존립 타당성을 받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첫째로 디오클레치아누스(284-305)황제의 박해는 그 이전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 특히 데키우스와 알레리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넘어서고 있었다. 4차에 걸친 박해를 통해(303-305) 교회박멸하고 성서를 불사르고 교회지도자를 투옥하는 등 온갖방법의 희생을 요구했으며 단체로의 희생을 명령했다. 기독교는 로마의 제신과 황제숭배에 전면적으로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큰 세 개의 박해가 있었음에도 지속적인 국가의 위협세력으로 존재했었다. 이것은 발본색원, 절멸로 나타났으며 로마제국의 기독교에 대해 존립부당위판단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그보다 8년 후에(311) 동방에서의 이 박해의 장본인이었던 갈레리우스 황제는 동시에 이 박해에 대한 한계성을 느꼈다. 어떤 위협을 가해도 순교로 승리하는 기독교에 보고 자신도 임종시 해괴한 병으로 죽어가게 됨을 당하면서 기독교를 존립부당위판단으로부터 존립당위판단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막시미누스 다야 황제는 312년의 사비누스의 갈레리우스 칙령의 재해석을 통해 기존 선조의 종교를 최후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기존 종교로의 복귀를 높이 평가하는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평가에서 명쾌한 해명을 유보하고 있다. 바로 그 이유로해서 갈레리우스 황제의 관용칙서를 그대로 볼 수 없었으며, 은익하려는 시도로 기독교인을 대한 나머지 가치판단에서 존립타당성을 유보했던 것이다.

넷째로 그로부터 4년후의 막시미아누스의 종교관용론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313) 첫째로 그 이전에 선행하는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칙령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 둘째로 막시미아누스 황제가 죽기 이전이라는 점이다. 그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이제 떠오르는 기독교에 대해 자신의 힘을 넘어서 존립당위판단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밀라노칙령을 요약하고 있고, 312년의 은폐사항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가치판단의 전도요 존립당위판단에 대한 항복의 선언이다.

이제 새 시대는 막시미아누스와 함께 그의 사고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섯째로 밀라노칙령은 기독교에 대한 완전한 해방선언이요 또한 이교도들에 대한 완전한 종교관용을 말한 것이다.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의 밀라노에서의 만

남은 결국 콘스탄티누스의 적극적 판단 곧 기독교의 존립당위판단을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 밀라노칙령의 요지를 따라 종교정책은 확실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들은 교회공의회를 종교정책의 대폭적인 제정 및 집행기관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교관용정책은 1) 조상종교와 로마고대종교에 대해서 문을 열어 놓았고, 2) 법적규정을 만들었으며 당시에 논점이되는 사항인, 박해와 관련된 해결책을 신자와 성직자, 성직자 일반의 문제, 순회성직자, 성례전, 성직자의 고리대금업 금지, 부활절관습의 통일, 교회내의 사제계급의 임무 확정, 이교적 신학에 대한 수용태도, 일반신도규정, 결혼규정 방향으로 지향하였으며 3) 기독교에 대한 조건과 제약의 철폐(주일, 공여금에서 제외, 주교의 권한, 순교자기념일 책정, 교회설립), 4) 기존 교구의 복구를 위한 황제의 재정지원, 5) 기독교의 종파들에 대한 비판적 신학적 수용정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조치들을 통해 시대의 전환기에 매우 큰 족적을 남겼던 것이다. 본 논문의 공헌이라면 바로 존립당위판단을 받은 기독교에 대해 콘스탄티누스가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가치판단적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발견이었다.